

제429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8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5)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6)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8)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0)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6)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3)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9)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3)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5)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9)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3)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3)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0)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3)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3)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8)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3)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5)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5)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8)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6)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9)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8)
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2)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7)
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4)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6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6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5)
6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2)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4)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9)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8)
7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7)
7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5)
7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8)
7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7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2)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7)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1)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2)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1)
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0)
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0)
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4)
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8)
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9)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9)
9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6)
9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7)
9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9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9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3)
9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1)

9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1)
 9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98.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7)
 9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1)
 100.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7)
 10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8)
 1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7)
 10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3)
 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48)
 1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022)
 10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9)
 10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우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1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4)
 10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9)
 1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6)
 111.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4)
 1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9)
 11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6)
-

상정된 안건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7)	8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8)	8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9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6)	9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7)	9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2)	9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9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6)	9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3)	9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9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2)	9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0)	9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5)	9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2)	9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1)	9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3)	9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7)	9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6)	9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3)	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8)	9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4)	9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7)	9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0)	9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3)	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0)	9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1)	9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4)	9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5)	9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9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6)	9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8)	9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0)	9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9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6)	9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3)	9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9)	9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3)	9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9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5)	9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9)	9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3)	9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3)	10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0)	10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3)	10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3)	10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8)	10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3)	10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10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5)	10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5)	10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8)	10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10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6)	10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10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9)	10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10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10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10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10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8)	10
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2)	10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7)	10
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4)	10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0
6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0

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0
6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5)	10
6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10
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2)	10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4)	10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9)	10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10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8)	10
7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7)	11
7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5)	11
7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8)	11
7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11
7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2)	11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7)	11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1)	11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2)	11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1)	11
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0)	11
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0)	11
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4)	11
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8)	11
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9)	11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9)	11
9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6)	11
9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7)	11
9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11
9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11
9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3)	11

9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1)	11
9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1)	11
9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1
98.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7)	11
9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1)	11
100.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7)	11
10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8)	11
1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7)	11
10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3)	11
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48)	11
1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022)	11
10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9)	12
10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12
1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4)	12
10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9)	12
1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6)	12
111.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4)	12
1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9)	12
11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6)	12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7)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8)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6)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7)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2)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6)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3)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2)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0)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5)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2)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1)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3)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7)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6)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3)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8)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4)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7)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0)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3)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0)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1)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4)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5)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6)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8)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0)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6)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3)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9)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3)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5)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9)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3)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3)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0)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3)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3)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8)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3)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5)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5)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8)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6)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9)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8)
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2)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7)
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4)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6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6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5)
6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2)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4)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9)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8)

75. **국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7)
76. **국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5)
77. **국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8)
7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7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2)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7)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1)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2)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1)
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0)
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0)
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4)
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8)
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9)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9)
9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6)
9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7)
9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9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9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3)
9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1)
9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1)
9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98.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7)
9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1)
100.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7)
10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8)
1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7)
10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3)
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8)
1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22)

10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9)

10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1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4)

10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9)

1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6)

111.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4)

1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9)

11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6)

(14시04분)

○**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3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세 가지 법률안을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일 뿐 아니라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 산업은 공중보건 강화와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원 확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배당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은 기업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설치 근거가 훈령에 규정돼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내용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근 국정농단과 내란 비상계엄 선포 등 비정상적 사유로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지 못

하는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상태로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최근 인사가 강행되는 등 알박기 인사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3건의 법률안은 각각 국민의 건강과 경제발전, 국가재정의 투명성 그리고 공공기관 거버넌스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4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있어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나 파면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다면 임명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에도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이 새로 공공기관장 45명을 임명했습니다. 그중 8명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탄핵당한 정권이 임기 말기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들을 임명하거나 제청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수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이어질 위험이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과 해당 정권에서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과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핵당한 정권의 부당한 인사를 차단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 법률안 11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하단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정부 증액동의의 단위를 프로그램(항)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 심사에서 증액 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지출항목 각항과 새 비목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그간 국회는 모든 증액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동의를 구하고 있어 증액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증액 동의의 최소 단위를 항(프로그램)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항의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 증감 심사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비목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실질적인 사업 단위인 세부사업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하단입니다.

박해철·신영대·이해민·민형배·정일영·윤준병·김주영·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대통령 교체 시기의 공공기관 운영상 갈등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일괄적인 임원 교체로 인한 기관 운영의 공백 발생 가능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기를 연계시키는 경우 임기 만료 시점을 대통령 임기 종료일과 맞추는 방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기관장의 임기 종료까지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의 우선적 인사, 인사 겸증 등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할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 및 책임성 등의 소급입법 필요성과 이미 임명된 임원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이종욱 의원,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 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이 가능해지면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연으로 자체적인 정책금융 공급 여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출연금만큼 감소한 한국수출입은행 자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 출자가 늘어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실질적으로 재정의 간접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국회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대납하는 경우 정부가 매년 9 월 30일까지 국회에 다음 연도 출자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을 대납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하단입니다.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조달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판례가 공공계약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별 부과보다는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제재하는 것이 계약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개정안에 따른 처벌 수준이 유사 위반행위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재정적 독립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시 정부 수입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행 법정적립금 비율 30%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 개정안과 같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고려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선 이소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11번 국가재정법 그리고 96번

민간투자법에 관해서 대체토론과 함께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기근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소영 위원 민간투자사업이 2차관님 소관 업무 맞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께서 발의한 이 두 법안의 취지가 민자사업이 추진되다가 중간에 취소돼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 다시 예타부터 새로 거치면 사업이 너무 지연되니까 민자사업에서 받은 적격성조사로 예타를 갈음하자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위례신사선 관련한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례신사선이 2014년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돼서 2019년에 제삼자 제안공고 거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최근에 계속 문제된 건설비 급등으로 논란이 이어진 끝에 작년 6월에 최종 민자사업이 좌초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예타 중에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소영 위원 이게 차관님 취임 전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요. 유사한 사업들 잘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이 법안도 발의되고 또 많은 의견들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례신사선, 제 지역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선인데요. 11만 명 넘게 사는 신도시의 핵심적인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오래 지연되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공사비 급등에 따른 이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맞습니다. 몇 년간 건설 자재비가 너무 폭증하니까 민자사업자가 기존에 승인받은 총사업비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총사업비를 늘려 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정부는 관련 규정에 건설 자재비 인상 반영할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방치되다가 민자사업자가 두 손 들고 나갔고 그래서 이제 전액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사업이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왼쪽 회색 부분이 민자사업이 했던 기존 계획이고 오른쪽 하늘색이 재정사업 전환된 이후의 상황인데요. 원래 왼쪽 총사업비가 1조 400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한 7000억 그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던 게 한 3800억 원 정도 됐었고요. 여기서 알려지기로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했던 총사업비 증가분이 한 1200억 원 정도 늘려 달라, 총사업비를 이렇게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또 민자투자자가 빠지는 바람에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오른쪽 하늘색 부분으로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세금으로 투입되는 재정지원분이 원래는 38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1조 2000억 원이 늘어서 1조 6000억 원대가 됐고요. 그중에 국비로 부담하는 비용도 원래 1500억 원 정도 규모에서 한 5000억 원이 더 증가되게 됐습니다. 서울시 부담분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1200억 원을 안 올려 주다가 결국에는 재정으로 1.2조 원, 그러니까 10배 가 더 들어가게 된 상황인 거지요. 그리고 사업기간도 최초 예정에서 3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게 어리석은 소극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 사안만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차관님, 마이크 좀 가까이 갖다 대고 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그래서 기재부가 이런 문제를 의식해서 위례신사선이 좌초되고 난 작년 10월에 물가특례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다음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 건설비 급등에 대응해서 총사업비의 4.4%를 상한으로 사업비 조정을 해 주겠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사업비 인상률 4.4%라는 게 건설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2년간 16.4%인데 여기에서 CPI 7.6%를 빼고 그 나머지 중에 50%를 반영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건설물가 상승률이 16%대인데 4.4%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주세요.

○**이소영 위원** 사업비를 조정해 주겠다는 게 실제 건설물가 상승의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물가특례가 기존 사업들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금 경기 남부의 핵심 교통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GTX-C 노선 그리고 부천 대장-홍대선, 대전하수처리장 사업, 목포, 부산 승학터널, 아주 많은 필수 인프라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기재부가 물가특례를 개정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인정해 주는 사업비 상승률을 일부 조정한다면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GTX-C 사업 포함해서 위기 겪고 있는 사업들 기재부가 나서서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한 SOC 사업이 다른 국가적인 과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 사업만 놓고 보면 수평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 같긴 하지만 다른 민자사업 전체 체계하고 같이 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민자사업의 기본적인 체계는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물가상승한 부분을 반영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

후에는 다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공사비 인상분을 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소영 위원** 이게 실시협약 체결한 사업들만 조정해 준다고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게요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들은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은 대부분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협약을 체결한 지 얼마 안 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곳들을 이미 협약 체결했다고 해서 기준 2%, 3% 정도 물가상승하던 건설비 상승률이 2년간 16% 이상 상승했는데 그걸 방치하고 이 사업이 좌초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제도 우리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공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통대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경기도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 중앙부로만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좌우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기재부도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에까지도 실시협약을 없던 걸로 원위치하는 문제는 당초에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기업들과 형평 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공운법 혹시 어느 차관님, 누구 소관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말씀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 차관님,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관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또는 민주당에서 공공기관을 전리품 대하듯이 하는 법안들이 이번에 많이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들 검토 아직 못 해 보셨을 텐데 아마 제대로 된 검토해 보셨으면 이런 법안들이 본래 취지나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앞으로의 실행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많다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수 법안이 공공기관장과 이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하고 연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발상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는 기본적으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

○**최은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한다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최은석 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임기 말 6개월 이전에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도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임기 중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을 국회가 제약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일치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지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야 간에도 법안을 제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최은석 위원** 차관님,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돼 있고요.

○**최은석 위원** 차관님, 잠시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리고 항목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최은석 위원** 차관님, 잠깐만요, 잠깐만.

그리고 지금 일부 법안들은 정부의 철학에 맞지 않으면 직무평가를 빌미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등장했습니다. 곁으로는 평가라는 포장을 씌웠지만 결국은 정권 코드에 맞지 않으면 내쫓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정권의 놀이터로 전락시키겠다는 이런 법안 이런 것들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불과 6개월을 남겨 놓고 무려 59명의 기관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전체 공공기관장과 임원 3000명 중에 86%가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추천한 인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끝까지 알박기 인사를 남발해 놓고 이제는 법까지 고쳐서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고 합니다. 이것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답변은 좀 이따 하십시오.

더구나 민주당은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사퇴 강요하다가 이를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법원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법을 고쳐서 전임 정부 인사를 아예 합법적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불법으로 하고 이제는 법까지 뜯어고쳐서 보복을 정당화하겠다 이런 발상,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OECD 국가 사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OECD는 오히려 반대로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기관장 임명은 선거 주기와 무관하게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경쟁적인 절차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불명확하거나 정권에 따라서 자주 변경되면 경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훼손된다 하는 이런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런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한 법안 그리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이런 글로벌스탠더드와 선진국들의 스탠더드에도 정면으

로 역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기관장의 임기는 정권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십 명의 기관장들을 일괄적으로 물갈이한다면 공공기관은 권력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한마디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조항 하나 하나의 타당성이나 혹시라도 발생할 부작용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재정소위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석 위원** 저는 차관님이 지금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의 이사나 감사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공감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OECD 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례 조사해 본 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차관님이 공감하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줘요.

○**최은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저희 의원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이게 정부에서 특히 기재부에서 오늘 여러 가지 글로벌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 마치 정권을 전리품 대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에 그렇게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진짜 심각하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와 동의한다는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본 의원실에 자세하게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님 하고, 우선 이인선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이인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일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인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임이자** 왔다 갔다 합시다.

○**정일영 위원** 정일영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장하고 감사 임기 일치하는 것 등 법안 제가 제안설명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차관님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매번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상임위별로 ‘당신 나가라, 왜 아직까지 있느냐?’, 계속 그런 것 보고 계시지요, 지난 한 10여 년간?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법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같이한다, 이게 소급 적용은 어려운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끝났으니까 다 나가야 된다’ 그렇게 법 적용은 어려울 겁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되고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는 분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일단 막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데 또 새로운 정부와의 국정철학, 국정 방향은 주요 공공기관장들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LH,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 어저께 발표했지만 LH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 정부에서, 성격이 다른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하는 것 보다 현재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사장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 그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재인 정부 끝날 때도 이랬다 저랬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인가요? 탄핵이 되고 나서 과연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사실상 대통령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격이 없는 측근 인사, 보은 인사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탄핵 이후에 한 60명 그리고 과연 이후에도 한 30명 가까이 임명된 걸로 알아요. 이거는 안 되지요. 대통령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것도 자격이 있는, 전문성이 있고 경영 능력이 있는 분들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알박기, 보은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따져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직무평가 말씀을 하시는데 직무평가를 항상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제출한 법에는 국정농단이나 내란 같은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임명된 분들이 있으니까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해서 능력이 있으면 그냥 계속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만 정말 능력이 없는 알박기, 일종의 보은 인사, 낙하산인사, 전문성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되지요. 저는 그런 각도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차관님, 지금 한 300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예산은 전부 다 합하면 정부보다 많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예산이라기보다는 매출 기준으로 많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 되겠지요, 정확히는 다 포함해서, 국고도 있지만.

그러면 한 300개, 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1년 이내에 임기가 끝나는 분이 몇 퍼센트,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것까지는 제가……

○정일영 위원 아직 모르시나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정일영 위원 아마 50% 이상, 더 많은 분들이 1년 이상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또 최근에 임명된 분들은 여러 가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정부, 이제 정부조직 개편도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또 대통령 임기와 같이한다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 주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이게 시행된 지가 한 1년 정도 됐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1년 만에 이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사실은 아직 초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공급망안정화 기금에 따른 지원되는 사업 자체가 꽤 장기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5년의 존속기한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원 조건을 만들 때 너무 단기로 가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하다 보니 이게 좀 기간을 길게 가야지만 안정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제안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불인가요? 그것 투자하게 돼 있는데 그게 수출입은행에서도 출연을 하게 되는데 동시에 미국에 투자하는 재원에 대해서 일종의 보증도 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러 가지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문제는 없겠습니까,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현재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끝으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했던 사항이 잘 해결이 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인데요. 미국 이민국 등등이 단속을 했잖아요, 현대차하고 LG엔솔하고. 쇠사슬로 묶고 그거는 좀 대단히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인데? 물론 법은 따져 봐야 되겠지만 다소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거는 좀 어떻게 우리 정부 기재부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이 있을 텐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현지에 간 게 취업 목적이라기보다는 공장 안정과 시운전을 위한 목적으로 갔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련돼서 외교부 중심으로 이 부분을 계속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조속한 귀국이 되도록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직 귀국 날짜는 안 정해졌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언론에 나온 그 날짜는 그런데 정확하게는 아직 저희 쪽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긴밀히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무튼 우리 국민들 잘 보호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께서 참 짐잖으신데 공공기관장 임명 관련된 정책·제도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마치 이게 무슨 전리품 얘기를 하시면서 민주당을 공격하시는게 되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 근래 기사들을 보면 오히려 최은석 위원님께서 먼저 성찰과 반성이 전제돼서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이자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그게? 의원이 발언한 것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그것은 평가에 불과한 건데.....

○김영환 위원 얘기 끝까지 들어 보세요. 끝까지 들어 보세요.

○유상범 위원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게 어딨어요?

○김영환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금거북이 누가 줬습니까? 금거북이 누가 줬어요?

○위원장 임이자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서희건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누가 받았습니까? 공천 관련해서 이후 환화백 그림, 김상민 검사.....

○위원장 임이자 의사진행을 위원장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것 때문에 김건희 특검 반대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정책·제도적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임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 무슨 전리품 얘기가 나옵니까? 좀 시정해 주세요, 이거는.

○박수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세요!

○김영환 위원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유상범 위원 이거는 신상발언 주세요.

○김영환 위원 사과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뭐 사과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그러면 신상발언하십시오.

○최은석 위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오늘 저보고 성찰과 반성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이나 경제 아마추어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기업의 임직원들 체포된 것들, 이런 것 전반적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먼저 성찰과 반성을 하고 진정하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진정하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산업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란봉투법부터 해 가지고 더 센 상법부터

해서 국가경제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먼저 성찰과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한테 개인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성찰과 반성을 하라고 한 김영환 위원님 진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십시오.

○**김영환 위원** 김건희 특검 왜 반대했어요, 그러면?

○**최은석 위원** 지금 언제 적 이야기를 가지고 저한테 자꾸 그러는 겁니까?

○**위원장 임이자** 정리하시고요.

○**김영환 위원** 언제 적 얘기라니요? 다 나오고 있잖아요, 부정과 부패가.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 위원님.

○**이인선 위원** 차관님, 요즘 공공기관 관련해서 방금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 뭐냐? 알박기 인사다, 낙하산인사다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소위이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아니라서 오늘 나온 공운법에 대해서 차관님한테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한 23건 정도가 공운법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내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공운법에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장 내지는 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가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했고, 여러 가지가 사례마다 예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차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한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에 보면 알박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공공 인사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 발령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를 거치고 윤석열 정부를 거치고 5월까지, 아직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도 29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다 저쪽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장은 부여받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를 소급해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헌법에 소급금지원칙이 있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은 사법작용의 일반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13조 1항에 보면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급금지원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그것을 거꾸로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임기가 주어졌으면 임기를 해야 되고요. 그 밑에 임원에 대한 임기는 또 별다른 임기고요. 기관장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정철학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지만 공공기관장은 별씨 임용을 할 때 공공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를 보고 임용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철학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폐어하게 보면 이 사람이 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마 나오게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차관님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임자가 보통 임용될 때까지 임기를 준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인선 위원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조직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이인선 위원 안정성 고려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자율성, 안정성, 연속성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경영을 위해서 결국은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난 19세기 때 미국에서도 교체임용주의라고 해서 진행하다가 중간에 어쨌든 대통령 암살이 되면서, 내가 어떤어떤 자리를 줄게 약속을 했는데 그 자리를 못 받게 되면서 그 사람이 암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엽관제도 내지는 교체임용주의가 스톱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의 변화나 추진력, 마인드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 내지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면서 매관매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이 불안해지지 않아야 되고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치르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청구서를 받아서 그 청구서대로 뭔가를 주기 위해서 공공 기관장 임용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소급하더라도 그다음부터 소급이……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지금 이재명 정부든 여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다음 정부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가야 되는 게 공공기관장의 임용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는 이 문제하고 관련해 기본적으로 명분과 당위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현실도 같이 살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역사적인 현실하고 관련해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끊임없는 논란과 감사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뭔가 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를 판단하고요.

두 번째 역사적인 현실은 뭐냐, 지난번 국회 때도 이 문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야 간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상당 부분 큰 틀에서 합의 근처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인 현실도 고려해서 명분, 당위와 함께 같이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인선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이인선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논의를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못 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정부도 정무직은 교체를 했지만 결국은 연준이나 중요한 기관장은 지금 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잘 살펴셔서, 방금 하신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양쪽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위원장님, 이게 그냥 이렇게 바로 소급해서 무 자르듯이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소급입법은 위헌입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이자 예.

○최은석 위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한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저한테 발언의 내용을 가지고 성찰과 반성을 하라고 한 것 이것은 같은 기재위원으로서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를 벗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영환 위원 사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예의를 지키세요.

○최은석 위원 저는 김영환 위원님한테 예의 안 지킨 적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의 안 지킨 적 없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우선 마지막 질의부터 듣고 나머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박대출 위원님 질의까지 끝내고 국민의힘 의총이 있는 관계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세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공운위법 관련해서 2차관님 답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은경 장관 건 해서 논쟁이 됐고 그래서 형사처벌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초선 때 법안 발의했습니다. 임기일치법 통과시키자 해서 법안 발의했는데 이번에 22대에는 안 했지만 그때 했었고요. 그다음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권익위원장 억지로 밀어내기 작업하면서 해서 재판받고 수사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행태를 반복하지 말자는 그 속에서 문제가 됐었고 12·3 내란 이전에 이미 기재위에서 양당 간사님들이 상당 부분 합의를 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후에 임기일치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급입법하자는 것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제도개선 하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 이제 앞으로 이런 고리를 끊자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정당이 가면 그 책임지는 정당이 실제 책임지고 정책을 풀도록 하자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차관님 이야기하신 것 그 취지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오기형 위원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결단할 건가가 문제인 것인지 내용 자체 가지고 지금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제 실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조지아주에서 갑자기 우리 국민들 한 300여 명 이상이 쇠사슬 해서 잡혀 들어가는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론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 비자 없이는 투자도 힘들다, 미국에서 대한민국에게 3500억 달러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비자의 행정적 절차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어느 기업이 제대로 투자하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별적으로 많은 문자를 받았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다른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겠지만 이것 좀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실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미국 정부와 협의할 때도 이후에 그런 문제의 안전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개진해야 된다. 꼭 그걸 제대로 좀 해 주십사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아까 논쟁이 나와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제도개선, 메시지 충돌 없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오기형 위원** 지금 저희가 더 센 상법, 상법 개정한 것에 대해서 이게 아마추어냐 아니냐 또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진 않습니다.

내란 이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가가 최바닥을 찍을 때 4월 9일이었습니다. 2290이었습니다. 내란 끝날 무렵, 대통령선거 끝날 그 무렵에 6월 2일, 6월 3일 전후로 해서 겨우 2700이었습니다. 내란 이전 6개월 동안에 평균 265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란이 수습되면서 겨우 정상화됐고 그 뒤로 두 달 사이에 상법 개정 하나 신뢰하고 코스피 지수가 500이 올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천 몇만 명 사람들이 같이 관심 갖고 그 지수가 올랐으면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투자자들이 자기 재산을 책임지고 하면서 투자하는데? 시장에서 지금까지의 과거 행태에 대한 반성과 비판과 그 속에서의 상법 개정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시장의 평가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또는 우리가 과거의 어느 정부든 간에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나 기관투자나 일반투자를 무시하는, 들러리 세우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 속에서 지금 상법 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이 상법 개정했던 것에 대해서 이걸 왜 했냐 내지는 흡집내기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더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점을 우리는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24년도 2월 달엔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2월 달에. 그 내용 중에 밸류업 정책이 있었고 밸류업 정책의 키워드 중의 하나가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이고 또 하나는 자사주 처리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 추진하는 것 중에 대부분 키워드가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 중에…… 밸류업 단어는 안 썼지만 사실상 충실의무, 상법 개정했었고 그리고 자사주 문제 이후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하나 다 할 겁니다.

이것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고 재정의 문제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그 많은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메시지 충돌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또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조세소위 논의나 다른 정책 논의할 때 정부에서도 같이 한번 아이디어와 지혜를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2차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부작용이 없는 쪽으로 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 간에 소위에서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소위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대출 위원** 실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판단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지, 가능하다라면 5년 대통령 임기를……

그러면 기관장 임기를 2년 반씩 합니까, 아니면 5년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맞추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그냥 맞춰 버리자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정책 입안을? 공공기관이 동네에 있는 기관도 아니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기능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곳들인데.

전체 공공기관이 지금 몇 개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331개입니다.

○**박대출 위원** 339개가 아니고 1개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대출 위원** 부설기관은 빼고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대출 위원** 그 300개가 넘는 기관의 임기를 맞추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무지한 거고 알고 그런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는 현실적인 판단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차관은.

그게 그렇게 만일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이것은 공공기관도 아니고 정무기관이나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는 현실도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박대출 위원** 300개가 넘는 기관의 그것을 어떻게……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임명은 어떻게, 그 적임자를 뽑는 과정을 어떻게 대통령 임기랑 맞춘단 말입니까? 그게 현

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박대출 위원** 100개도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된다 안 된다를 선협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소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은데 왜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위험하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소위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신중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내용을 함께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2차관 정도 된다면.

과유불급이라는 이 논리 잘 아시지요? 물극필반 기만……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하게 돼 있다는 그 이치입니다. 잘 아시고요.

지금 전리품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도, 공방도 좀 있었지만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현 기관장들에 대한 임기 보장 문제가 먼저 전제가 되면서 이 논제도 들어가야 된다는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은 거예요.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무역 협의 이행하는 행정명령 서명한 게 지난 4 일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1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은 15% 자동차 관세 적용받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한 1~2주 내에 효력을 발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바로 받는 거지요? 일단 우리 기업이 먼저 피해를 입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저희는 아직도 25% 상황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자동차 부분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보다 먼저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내린 데 대해서 미국이 충분히 추가 청구서를 낼 것이다, 들이밀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지금 긴밀히 협의하는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박대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하는 도중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그 발언이 다소 못마땅하고 그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료 위원을 향해서 자극적이거나 이런

얘기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물극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역지사지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이 빛이 너무 세서 눈이 부셔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그런 기재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의하시고요. 또 박수영 간사님이나 정태호 간사님께서 이런 부분도 잘 조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3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3건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일 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민규 박수영 박홍근 안도결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소영 이인선 임이자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첨가 위원(3인)

박성훈 안규백 정성호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백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임기근

차관보 윤인대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산실장 유병서

세제실장 박금철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국제금융심의관 최지영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이상 3건 8월 21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2)

이상 9건 8월 2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2)

이상 6건 8월 2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이상 4건 8월 26일 회부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이상 4건 8월 27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8. 27.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이상 5건 8월 28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8. 28. 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0)

이상 7건 8월 2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8)

이상 2건 9월 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이상 6건 9월 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이상 3건 9월 3일 회부됨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5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7)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8)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이상 24건 9월 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7)

이상 2건 9월 5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721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722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725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